



수입규제 관련 기업의 회계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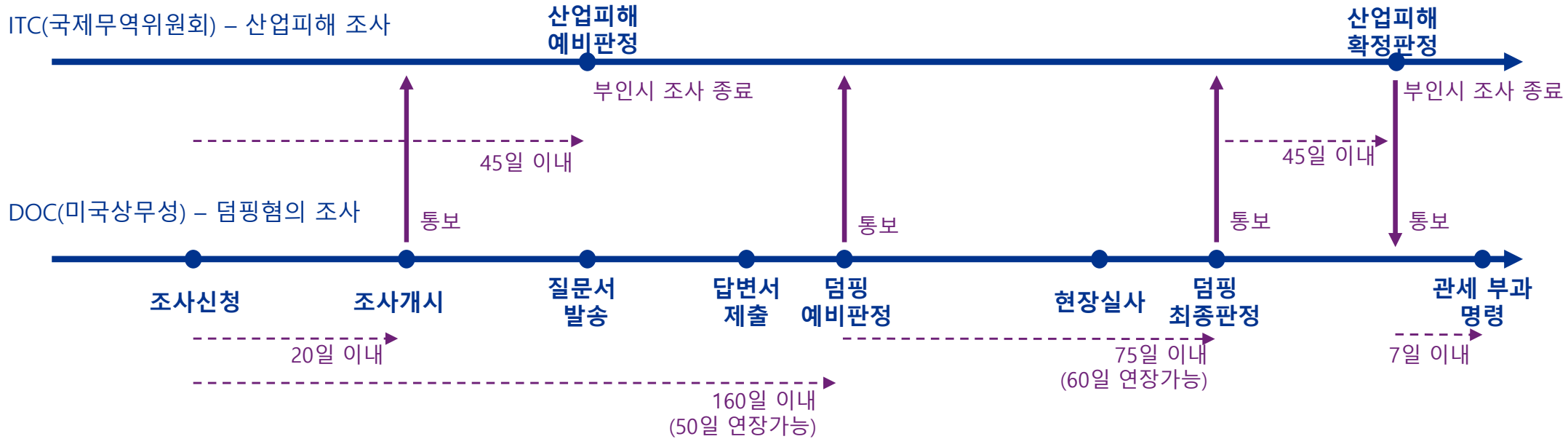


2019. 04

Agenda

- I. 수입규제 조사의 요구 사항
- II. 기업의 회계 관리 방안

조사 일정 및 수행 업무 - 미국 반덤핑 조사 사례



대응전담조직

분석과 답변실무를 담당할 **전담조직** 구성

조사대상 품목 분석 및 제품특성 분석 등 **전략 레벨**의 주요 분석 수행 조사전반 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대응전략이 이 시기에 결정

답변서 작성
1) 기업일반 2) 내수판매 3) 미국판매 4) 제품원가 등에 대한 상무성의 질문에 답변서 작성
답변서는 크게 매출과 비용/ 원가에 대한 상세 데이터와 이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예비 판정
답변서를 기초로 덤핑 판정을 수행. 덤핑 혐의 존재 판단시 **예비판정 덤핑마진율로 관세 예치** 시작

현장 실사
답변서 제출 내용에 대해 현장 실사 수행. 일반적으로 판매정보/원가정보 1주일씩 수행하며 미국 판매 법인 존재시 미국/한국 판매 각 1주일, 원가 1주일 실사 수행

최종 판정
현장실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덤핑 판정
덤핑혐의 부인시 조사 종료

산업피해 확정판정 및 부과
산업피해 확정판정에서 무혐의시 조사 종료. 혐의 존재시 덤핑 최종판정의 덤핑마진율로 예비판정부터 예치한 관세를 **소급 적용 및 부과**

외부자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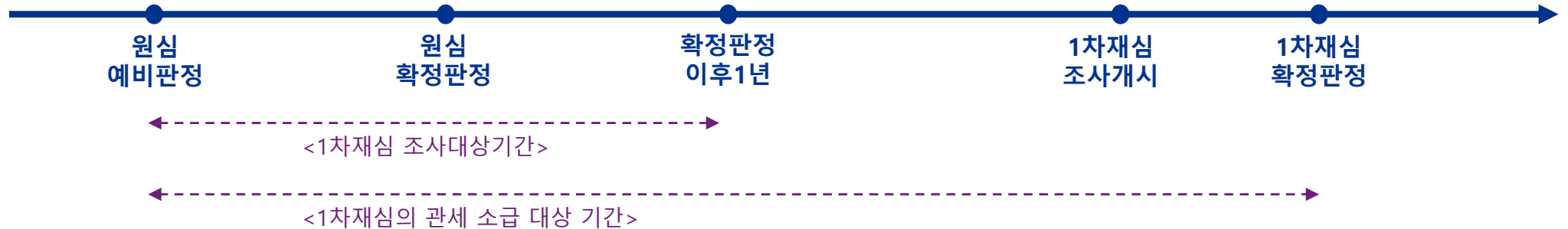
미국 현지 로펌 회계 자문사 등 선정

전사 지원조직

영업, 회계, 원가 및 제 비용 담당팀 등 **전사적 대응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경영진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함



조사 일정 및 수행 업무 - 미국 반덤핑 조사 사례(계속)



<연례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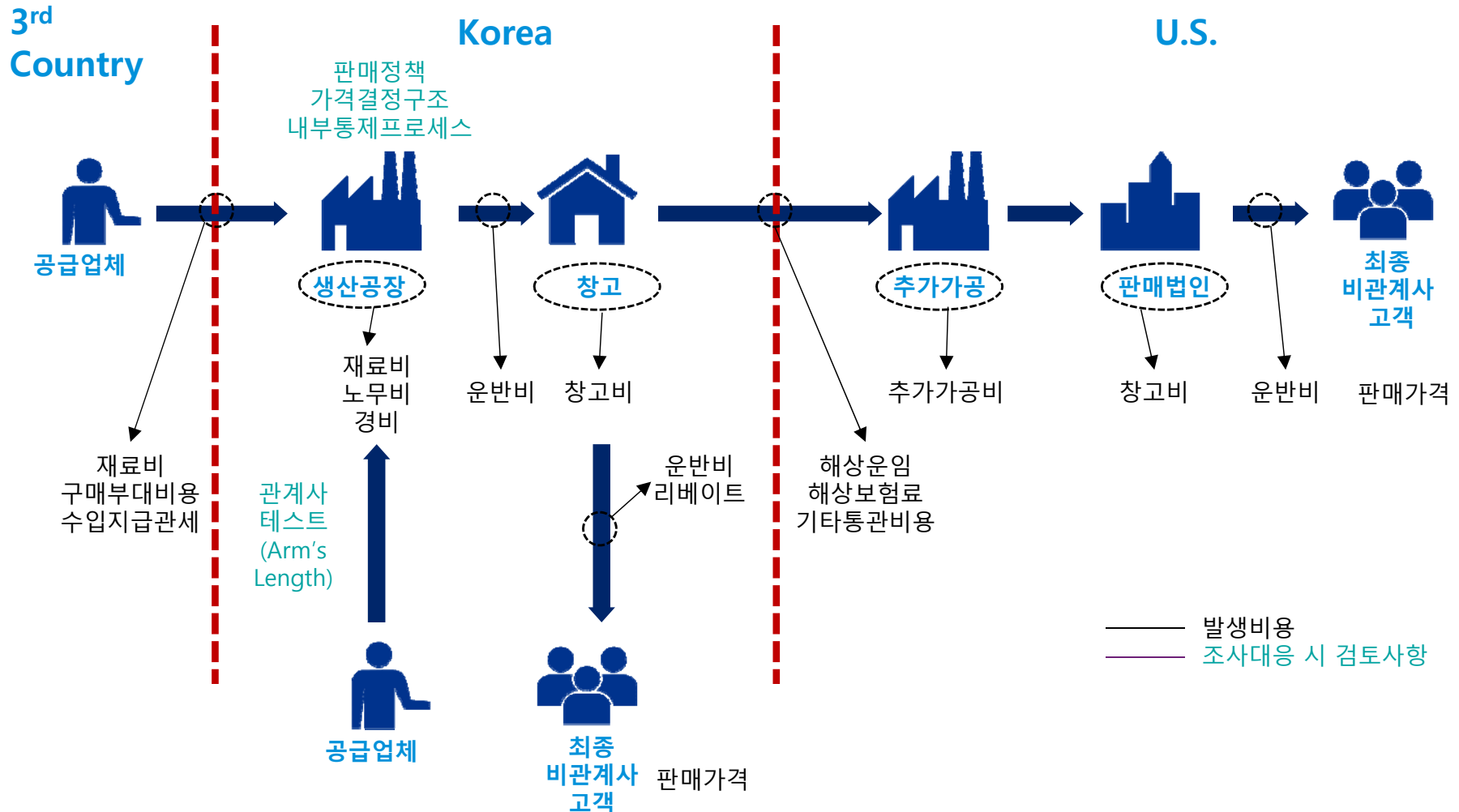
- | | |
|---------------------------|-----------------------------------------------------------------------------------------------------------------------------------------------------------------------------------------------------------|
| <p>1
관세 정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심예비판정 이후 예치/납부한 관세 금액을 1차재심 확정판정 적용 마진율로 소급 정산함 이후 매년 재심을 통해 각 1년간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정산 원심에서는 덤핑의 혐의만을 판단. 재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되는 반덤핑관세를 결정 |
| <p>2
월별 비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비교에 있어 조사대상 기간 전체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원심과 달리 재심에서는 이를 월별로 비교 |

• 사외 유출되는 반덤핑 관세 최소화를 위해서는 매 월별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덤핑마진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제도 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보 제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영업상황에서 필요하였던 수준이상의 준비가 필요함

무엇을 보고하여야 하나 - 기초 사항

반덤핑 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생산, 재고관리, 배송, 추가가공, 판매와 보증수리까지 기업의 전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개별 거래 건별로 연결한 것임



무엇을 보고하여야 하나 – 특수관계자 정보

한국의 그룹내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자(Affiliation)로서 이들과의 거래가격이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공정한 가격임을 입증해야 하나, 입증에 실패하여 AFA가 적용되는 사례 빈번

계열사 정보 입증 실패로 인해 AFA를 적용받은 사례

Comment 15: Reporting of Inland Freight, Warehousing Services, International Freight, and Other Services Provided by an Affiliated Company

(중략)

Department Position: We agree with petitioner. At the verification of [redacted] and [redacted], we had the opportunity to thorough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dacted] and its affiliated company and the affiliated company's U.S. subsidiaries. When the Department specifically requested that [redacted] obtain certain freight information between its affiliate and other unaffiliated parties,³⁶⁸ [redacted] stated that its affiliated company refused to provide the data. Despite the affiliation between [redacted] and the affiliated company, petitioner claims that in "multiple instances of common ownership between various companies in the [redacted] Group," [redacted] was unable to compel the affiliated provider to comply with the Department's data requests, asserting that there was no "direct ownership."³⁶⁹

(중략)

and warehousing fields for the final determination. For international freight and U.S. inland freight, we will apply the highest reported values by destination for [redacted]'s international freight and U.S. inland freight for the final determination. For home market inland freight for U.S. sales, we have selected second-highest transaction-specific value as AFA.³⁷⁰

전산/물류 전문 계열사

- 기밀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둔 전산 전문 자회사
- 그룹사 전체 물류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류 전문 자회사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타 비관계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
- 계열사와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임을 입증하는 데 난항

계열사 간 실제 관계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

-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상대방 계열사의 거부 사례 빈번
- 동일 지배 하에 있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 자료의 공개를 꺼림

Note: 1) Adverse Fact Available. 비협조, 정보접근 거부, 조사방해 등의 경우 수출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하는 것

Source: USDOC, KPMG Analysis

무엇을 보고하여야 하나 – 협력사 정보

한국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관계는 Close Relationship¹⁾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커, 이들 비관계사와의 거래가격 역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공정한 가격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가중

협력사를 관계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빈번히 제기

In the investigation that gave rise to the subject antidumping duty order on [redacted] [redacted], [redacted] argued that [redacted] was using its position as a chaebol to exert influence and control over nominally unaffiliated suppliers, which skewed the cost of the inputs sourced from these suppliers. The Department considered the following four factors in its investigation: (1) the terms and provisions of supply agreements; (2) the relative percentage that sales to [redacted] represented of each of the suppliers' total sales; (3) the terms of any financing agreements with suppliers; and (4) the overall profitability of suppliers.¹⁴ Despite finding that the [redacted] and its suppliers "cooperate closely" and that their business dealings create an "appearance of closeness," the Department ultimately concluded that [redacted] and its suppliers were

한국의 '재벌' 문화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주역인 '재벌'은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비취질 우려

Close Relationship

- 공급계약서상 '원가나 기술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공격받기 쉬운 포인트
- 협력사의 매출의존도가 높다는 것 역시 공격대상이므로 협력사의 매출구조 다변화 필요
-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원 역시 경영상의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 무조건적인 단가인하 압력 대신 공정가격을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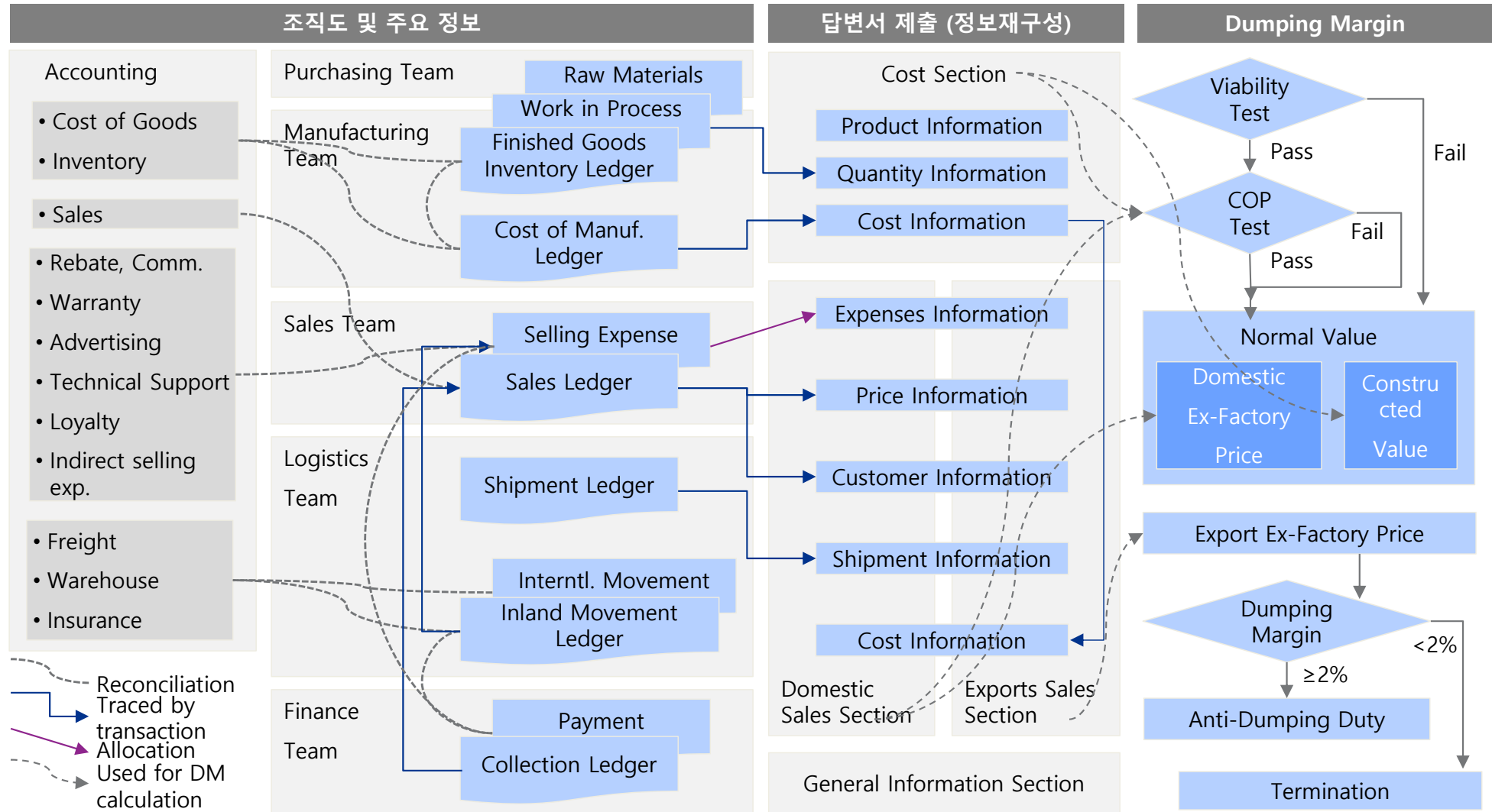
Note: 1) 실질적인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들과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개념

Source: USDOC, KPMG Analysis

Agenda

- I. 수입규제 조사의 요구 사항
- II. 기업의 회계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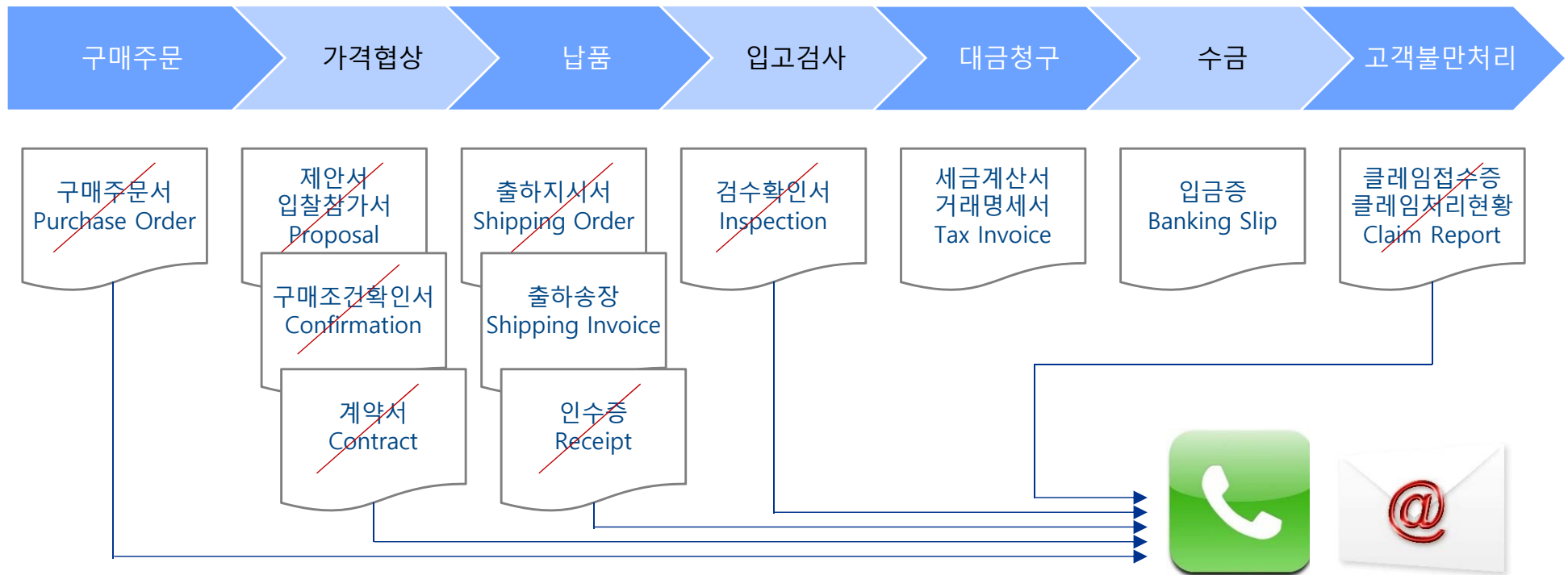
답변서 작성을 위한 정보 흐름



관련 문서의 구비와 기록

갑을관계, 신속·편의주의, '문서화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해야 할 문서들이 생략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재성을 부인당할 위험 증가

판매 프로세스와 발생 문서



Source: Press search, KPMG Analysis

표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립 (1/2)

국내외 잇따른 회계부정사건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

추진목표

주요 과업 내용



Source: KPMG Analysis

표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립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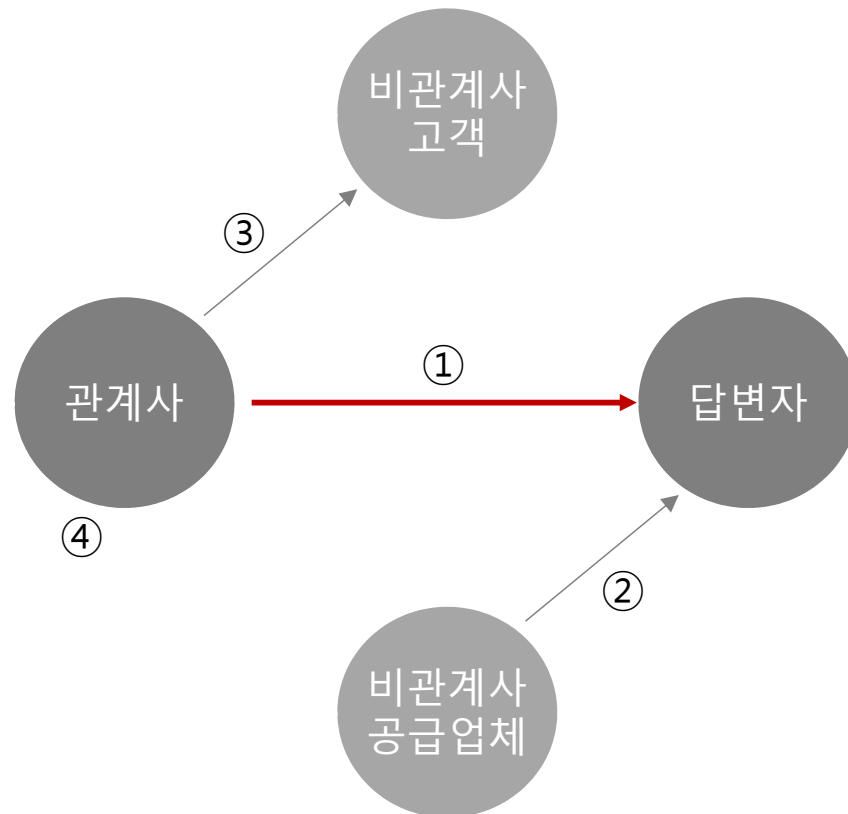
조사당국의 AFA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수준의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수립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수조건임

외감법상 요구사항	국내기업의 일반적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고유의 회계규정 미흡, 부서별로 업무 매뉴얼 작성/유지, 하지만 일관성/현실성/완전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의 식별/평가, 수익 인식, 계정과목의 분류, 재무제표의 종류 및 양식의 보고, 회계관행 등 회계시스템 전과정에 대한 선진 수준의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업무지침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서의 검토 및 승인 기능을 통해 오류를 통제, 하지만 체계적인 내부통제절차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 활동들은 수익/비용의 발생, 자산/부채의 증감을 통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바, 활동분석을 통해 회계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절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 점검/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서 자체점검 및 내부검증, 하지만 객관적/주기적 검증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정보의 오류/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조원장과 재무제표를 대사하는 등 검증정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장부의 관리방법과 위/변조, 훼손/파기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의 보관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규정 준수여부 혹은 통제절차는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회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회계 관련 문서의 보관 및 관리 관련 규정에 대한 점검 및 개선

Source: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KPMG Analysis

관계사/협력사 거래를 고려한 운영정책 수립

AFA, PMS 등 권한남용이 자행되는 최근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사/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들과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회사의 운영정책이 요구됨



①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

-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된 공정한 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정보가 요구됨

② 타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동일 원재료/서비스의 가격

- 동일한 원재료나 서비스를 관계사와 비관계사로부터 구입/사용한 경우 이들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시장가격 입증

③ 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동일 제품/서비스의 가격

- 당해 관계사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관계사인 당해 답변자와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경우 이들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시장가격 입증

④ 관계사가 공급한 제품/서비스의 총원가

- 당해 관계사가 공급한 제품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총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가 이상의 정상 판매임을 입증

Source: KPMG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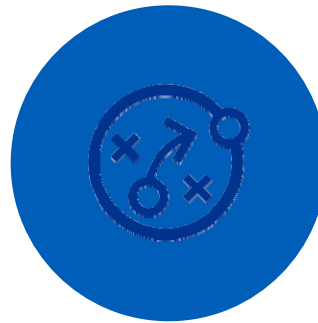
사전분석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기간·국가별 물량·가격의 추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고위험군(생산지-제품-소비지 조합)을 포착하고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한 판매정책을 수립, 통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취약 제품군 모니터링

- 해외의 주요 경쟁시장에 있는 현지 생산자의 손익추이 등 분석하여 하여 제소가능성 모니터링
- 제소가능성 있는 제품군에 대해 덤핑마진 시뮬레이션 하여 취약 제품군 판단
-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통상 차원의 위험역시 고려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최적 전략 사전 분석

- 제품 세그먼트 정의, 제품 특성 정의 등 산업피해 판정과 덤핑마진 계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이 필요
- 세그먼트의 정의에 따라 산업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제품특성의 정의는 조사 개시 이후 짧은 시간안에 제소자/피제소자 주장을 고려하여 결정. 사전분석없이 분석이 완료된 제소자에게 주도권 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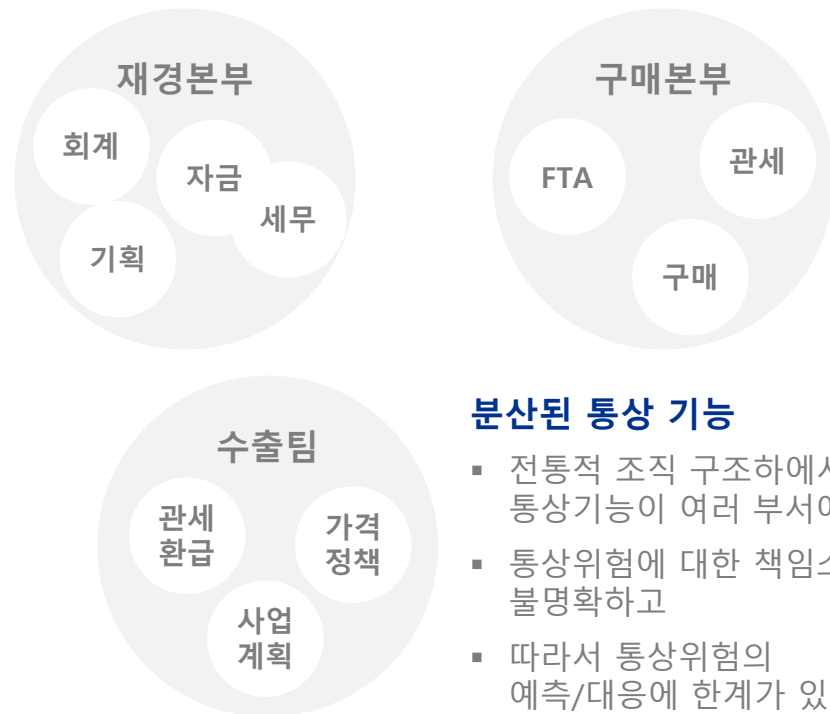
조사대응을 위한 정보/조직 구조 파악

- 반덤핑조사 대응목적 자료/정보는 기업내부 광대한 영역에 걸쳐 수집
- 고도로 분권화된 현대 기업 규모에서는 수십개의 팀에서 자료를 엮어 제출 필요
- 조사개시 이후 짧은 일정에서 자료의 구조와 이를 제공할 조직을 처음 파악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으로 조사 대응 불가

IT 기반 통상 전문조직의 구축

통상조직은, Value Chain의 각 기능을 국가별로 재배치 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글로벌 법인세-관세 최적화를 통해 실질적인 Value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진화

전통적 조직에서의 '통상 기능'



'통상 조직'의 필요성 증대와 조직개편 방향



Source: KPMG Analysis



Thank You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박 원
전략컨설팅2그룹 국제통상프랙티스
Partner

Mob: 02-2112-0823
wpark@kr.kpmg.com

심 종 선
전략컨설팅2그룹 국제통상프랙티스
공인회계사

Mob: 010-8320-9339
jongseonshim@kr.kpmg.com

kr.kpmg.com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